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004호

나. 발 의 자 : 이민옥 의원(찬성자 28명)

다. 발의일자 : 2023년 08월 11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08월 21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2023.3.27.)됨에 따라 소속 분과위원회인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도 폐지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내용 중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가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된 부분을, ‘필요 시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3월 27일 풀뿌리경제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시 별도의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됨.

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6조제3항)

- 서울시는 지난 2012년 경제정책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와 산업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희망경제위원회는 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과 서울시 산업·경제 관련
 - ▶거시 정책 조정과 중장기계획 수립·집행, ▶시와 자치구 또는 위원회

간의 협의·조정, ▶ 신성장 동력 산업과 도심형 제조업, 금융산업, 마을 기업 육성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대하여 자문·심의를 수행하며, 「시·도경제협의회 규정」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 경제협의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해왔음.

- 그러나 희망경제위원회는 2020년 이후 개최실적이 없어 서울시의 ‘2021년도 위원회 운영평가’에서 폐지 대상 위원회로 분류되었음.

< 희망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1) 제9조(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①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조정을 위하여 각 시·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었으나 다수의 조례에서 희망경제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의 누락이 발생하였음.

< 희망경제위원회 폐지에 따른 기능 대체 현황 >

희망경제위원회 조례(제4조)	입법반영 여부
1. 산업·경제에 관한 주요 거시적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반영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2. 산업·경제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사·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에 관하여 시 관내 20이상의 자치구와 시와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미반영
5.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20이상의 산업·경제에 관한 위원회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신성장동력산업 및 도상형 제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반영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
7. 산업·경제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정책집행사항으로 거시적인 정책협약과 조정이 필요한 사항	미반영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미반영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신규 반영 필요)
9.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미반영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6조제3항, 희망경제위원회 지문 조항 삭제 필요)
10.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산업·경제 분야 및 중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반영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
11.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미반영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9조2항에 신규 반영 필요)
12. 다른 법령 및 조례가 위원회의 지문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미반영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시장·장운영위원회 대항으로 희망경제위원회가 심의 지문 조항 삭제 필요)
13.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는 협동조합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반영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14. 시 관내 마을기업의 육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반영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15. 시 관내 금융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반영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이에 동 개정안은 희망경제위원회의 분과인 풀뿌리경제 특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그 취지면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의 풀뿌리 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⑤ (생략)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 한편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자격·선임방법·임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하며,²⁾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도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조례나 규칙 등에 위원회의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존속기한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개정안에는 이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 203.

- 따라서 동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동 조례 제14조에 따른 규칙을 통해서라도 위원회의 기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은 자문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사항은 최소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규정하지 않은 채 규칙으로 모든 규정을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수정의견 >

개 정 안	수정의견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⑤ (생략) <u><신설></u>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u>제6조의2(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u>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

개 정 안	수정의견
<p><신 설></p>	<p>다고 인정되는 사항</p> <p>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소상공인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p>⑤ 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 주요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p> <p>⑥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p>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용우	02-2180-8062